



선 람	기 관 의 장

제1305호      2023. 11. 03. (금)



시화-철쭉



시조-갈매기



시목-느티나무

## 고 시

- 삼척시 고시 제2023-182호 초지 지역지구 변경(해제) 고시 ----- 2
- 삼척시 고시 제2023-183호 도시관리계획(시설:체육시설)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4
- 삼척시 고시 제2023-184호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결의 ----- 5

## 공 고

- 삼척시 공고 제2023-1765호 삼척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6
- 삼척시 공고 제2023-1802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 15
- 삼척시 공고 제2023-1817호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18
- 삼척시 공고 제2023-1820호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19
- 삼척시 공고 제2023-1840호 농어촌도로의 노선(변경) 지정 공고 결의 [농어촌도로 하장 102호(판문리)] ----- 20

공 람									
--------	--	--	--	--	--	--	--	--	--

삼척시고시 제2023-182호

## **초지지역·지구 등의 지형도면 해제 고시**

초지법 제5조에 의거 조성된 초지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초지 지형도면 등 지정고시 지역·지구를 다음과 같이 해제고시 합니다.

2023년 10월 31일

## **삼 척 시 장**

### **1. 초지 지형도면 변경고시 취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 지정고시 지역·지구를 해제 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 규제에 대하여 투명화 하고자 함.

### **2. 초지 지형도면 등 지정 해제고시 내역 : 붙임참조**

### **3. 지형도면 등 기타사항**

가. 지형도면 : 게재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토지이용 \(eum.go.kr\)](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나. 도서열람 : 이해 관계인은 삼척시 축산과(☎ 033-570-3395)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초지 지역·지구 등 지정해제 내역 1부.

【붙임】

## 초지 지역·지구 등 지정해제 내역

○ 필지별 내역

연번	초지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해제면적 (㎡)	지정해제 사유	비고
1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근덕면 덕산리	산 20	목	1,457	1,457	초지법 제24조의2(초지로서 의 관리가 불가능한 초지에 대한 조치	지정해제

삼척시 고시 제2023-183호

# 도시관리계획(시설: 체육시설)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교동 798번지에 설치된 체육시설②(종합스포츠타운)의 정비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3일

## 삼척시장

가. 계획취지: 기반시설의 정비

나. 도시관리계획(시설) 변경 조서

1) 공공·문화체육시설

가) 체육시설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최근고시)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2	종합 스포츠타운	생활 체육시설	교동 798번지	121,608.1	감) 142.9	121,465.2	2013. 12. 27. (삼척시고시 제183호)	자연녹지지역 (2023. 4. 7., 삼척시-51호)

### ■ 체육시설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2	종합 스포츠타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면적 축소 - 121,608.1㎡ → 121,465.2㎡(감 142.9㎡)</li> <li>「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남쪽 경계에 접한 수소충전 복합스테이션의 진입도로부 확장(해당 도로 남쪽은 용벽으로 확장 불가)</li> </ul>

다. 도시관리계획(시설) 변경도 및 지형도면: 별도 첨부

라. 이 고시와 관계된 서류는 삼척시청 도시과(☎ 033-570-3876)에 비치하며, 일반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삼척시 고시 제2023 - 184호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거 우리 시 건축물 신축 등의 사유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11. 3.

## 삼척시장

### ○ 도로명주소 부여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미로면 두타로 1689 외 1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사유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미로면 삼거리 59-4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미로면 두타로 1689	2023.11.03	신규부여	20090826	지형지물(두타산) 영칭 활용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도계읍 심포리 296-3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도계읍 강원남부로 800-60	2023.11.03	신규부여	20090807	지역적 특성 반영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과(☎570-3947)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uso.go.kr](http://www.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삼척시 공고 제2023-1765호**

「삼척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31일

**삼척시장**

**삼척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교육경비 보조기준을 명확히 명시하여 각급학교 교육의 내실화 및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 문맥에 맞게 자구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경비 지원 기준 정비(안 제3조)**

- 시세의 20퍼센트 범위 → 전전 연도 시세 수입 결산액의 20퍼센트 이하

**나. 법령문을 알기 쉽게 이해하고, 명확성을 위해 띄어쓰기 등 문맥에 맞게 자구를 수정함.(안 제4조부터 제7조, 제10조 및 제11조)**

**3. 입법예고기간 : 2023. 10. 31. ~ 11. 24.(24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장(평생교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삼척시 청석로3길 16-41, 삼척시청 평생교육과(교육협력부서)
- 전화 : 033-570-4440
- FAX : 033-570-3188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이 조례 개정안은 삼척시 홈페이지(<http://samcheok.go.kr>) 입법/공고/고시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붙임 1. 삼척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서식) 1부. 끝.

삼척시 조례 제 호

## 삼척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삼척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삼척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삼척시 관내”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삼척시 관할 구역에 있는”으로,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를 “보조하는 데”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삼척시”를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로, “사업 (이하”를 “사업(이하”로,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각 호”로 한다.

제3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이 각급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은 전년 연도 시세 수입 결산액의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3조 단서 중 “제외 한다”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4조 중 “각급학교장”을 “각급학교의 장”으로, “보조신청서를 제출하게 할”을 “신청서를 제출할”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각급학교”를 “시장은 각급학교”로, “사항은 적정하고 균형있게 지원하기 위하여 삼척시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적정하고 균형있는 지원을 위하여 삼척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삼척시”를 “위원회는”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선출한다”를 “호선(互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과장급이상”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시과장급 이상”으로, “교육청”을 “삼척교육지원청”으로, “과장급 1명”을 “과장급 이상 공무원 1명”으로, “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위원회”를 “위원회의”로 한다.

제11조 중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을 “지급”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삼척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 교육재정 교부금법</u>」 제11조제8항 및 <u>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u>에 의하여 <u>삼척시 관내</u>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u>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u>삼척시 관내</u>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이하 “<u>각급학교</u>”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u>사업</u> (이하 “<u>보조사업</u>”이라 한다)은 다음 <u>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u></p> <p>1. ~ 6. (생략)</p>	<p><u>삼척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 「<u>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u>」 제11조제8항 및 「<u>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u>」에 따라 <u>삼척시 관할 구역에 있는 -----</u> ----- ----- <u>보조하는 데</u> ----- ----- ----- ----- -----</p> <p>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u>삼척시장</u> (이하 “<u>시장</u>”이라 한다)이 <u>삼척시</u>(이하 “<u>시</u>”라 한다) ----- ----- ----- <u>사업</u>(이하 ----- ----- <u>각 호</u> ----- ----- -----</p> <p>1. ~ 6. (현행과 같음)</p>

제3조(보조기준액 등) 시장은 각 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시세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국·도비 등 보조사업에 대한 자치단체 부담분은 보조기준액에서 제외 한다.

제4조(보조금의 신청) 각급학교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서 정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되, 관할 교육장을 거쳐 보조대상사업 및 그 예산액을 통지하거나 보조신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심의위원회) ①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은 적정하고 균형있게 지원하기 위하여 삼척시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삼척시 교육경비 보조 신청사업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한 경우 관계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제3조(보조기준액 등) 시장이 각 급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은 전년 연도 시세 수입 결산액의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

---- 제외한다.

제4조(보조금의 신청) 각급학교의 장-----

신청서를 제출할 -----

----

제5조(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각 급학교----- 적정하고 균형 있는 지원을 위하여 삼척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② 위원회는 -----

----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생략)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시 과장급이상 공무원 3명, 시의회 의원 2명, 교육청 과장급 1명, 교육 전문가 3명으로 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생략)

제7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통할한다.

② (생략)

제10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③ (생략)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호선(互選)한다.

③ -----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시 과장급 이상 ----- 삼척 교육지원청 과장급 이상 공무원 1명--- 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 총괄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수당 등) -----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지급----- .

#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 자치법규명: 삼척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견제출자:

개정안	검토의견	
	수정안	검토사유



삼척시 공고 제2023-1802호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이 철거되었음에도 건축물대장이 말소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자 하나 소유자의 거소 또는 주소불명으로 말소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의거 처분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1. 공고장소 : 삼척시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 2. 공고기간 : 2023. 10. 30. ~ 2023. 11. 14. (15일간)
- 3. 말소(예정)일자 : 2023. 11. 15.
- 4. 공고내용

가. 처분의 제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나. 당사자	성명(명칭)	박완○
	주소 (대장상주소)	당저리 131-1
1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건축물대장 철거(멸실)
	라. 처분하고한 내용	건축물대장 말소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당저동 131-1 주3 연면적(34.4㎡), 벽돌조, 점포
	마. 법적근거 및 조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5. 유의 사항

- 가. 청문 및 의견제출 기한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삼척시(청) 건축과 건축물관리팀(☎033-570-39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10. 30.

## 삼 척 시 장



##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하신 후에는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담당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청) 건축과 건축물관리팀

○ 연 락 처 : 033)570-3969

삼척시 공고 제2023 - 1817호

###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에게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일

### 삼척시장

- 1. 처분제목 :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 3. 처분대상

건축주	주소지	미송달 사유	위반건축물 주소	위반내용
정*옥 최*희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읍 **로 2**-2*	폐문부재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읍 **리 2*2-*번지	근린생활시설 및 창고 무단증축 121.98㎡

- 4. 공고기간 : 2023. 11. 1. - 2023. 11. 15. (15일간)
- 5. 게시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 6. 문의처 : 삼척시청 건축과(전화 033-570-3452)

삼척시 공고 제2023 - 1820호

###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에게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일

### 삼척시장

- 1. 처분제목 :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 고지
-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 3. 처분대상

건축주	주소지	미송달 사유	위반건축물 주소	위반내용
김*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정*로 3-**	수취인불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교동 752-1번지	근린생활시설 무단증축 58.04㎡

- 4. 공고기간 : 2023. 11. 1. - 2023. 11. 15. (15일간)
- 5. 게시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 6. 문 의 처 : 삼척시청 건축과(전화 033-570-3452)



삼척시 공고 제2023-1840호

### 도로의 노선지정에 관한 (변경)공고

「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도로의 노선을 다음과 같이 (변경)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02일

삼척시장

읍면	도로의 종류	노선명	노선번호	도로구간		총연장 (km)	주요 경과지	개발계획		지정사유
				기점	종점			도로 너비 (m)	포장 너비 (m)	
하장면	면도	판문선	하장102호	하장면 판문리 산25-1	하장면 판문리 산23-7	0.98	판문리	8.0 ~ 14.0	8.0 ~ 14.0	차로 선형개선

1. 사업의 명칭 : 농어촌도로 하장102호(판문리) 선형개선공사
2. 사업 시행자 : 삼척시장
3. 사업시행기간 : 2022. 08. ~ 2024. 12.
4.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
  - 열람장소 : 삼척시 안전건설국 건설과
5. 노선지정도 : 게재 생략(열람장소 비치)

###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사(변경)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m <sup>2</sup> )	편입 면적 (m <sup>2</sup> )	소유자	
	소재지	지번				주소	성명
1	하장면 판문리	산7	임	26,245	4	강원도 청선군 사북읍 파랑새길 * 2**동1**1호(소라파크)	권중길
2	-	산7-1	도	3,769	513	건설부	국
3	-	산7-10	도	749	251		삼척시
4	-	산7-2	도	1,473	318	태백시 황지동 2**-***	채현식
5	-	산7-3	임	3,797	1,557	강원도 청선군 사북읍 파랑새길 * 2**동1**1호(소라파크)	권중길
6	-	산7-4	도	687	176	태백시 황지동 2**-***	채현식
7	-	산7-6	도	393	305	태백시 황지동 2**-***	채현식
8	-	산7-7	임	196	14	태백시 황지동 2**-***	채현식
9	-	산7-8	도	322	129		삼척시
10	-	산7-9	도	3,896	3,143		삼척시
11	-	산8	임	1,587	726	장성읍 금천리 산**	최희집
12	-	산9-1	도	919	4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판문길 7**	김시덕
13	-	산9-4	도	2,732	915		삼척시
14	-	산9-6	도	138	129		삼척시
15	-	산10-1	도	302	146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판문길 7**	김시덕
16	-	산10-4	도	718	185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판문길 7**	김시덕
17	-	산10-5	도	331	255		삼척시
18	-	산17-1	도	1,984	180	건설부	국
19	-	산19	임	42,695	91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판문길 *	이상학
20	-	산19-1	도	595	48	건설부	국
21	-	산19-10	도	379	106		삼척시
22	-	산19-11	도	784	386		삼척시
23	-	산19-12	도	304	242		삼척시
24	-	산19-3	도	1,282	69	청선군 북면 고양리 ***	김시대
25	-	산19-6	도	1,508	1,126		삼척시
26	-	산19-9	도	1,737	1,053		삼척시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m2)	편입 면적 (m2)	소유자	
	소재지	지번				주소	성명
27	하장면 판문리	산20	임	19,817	2	삼척읍 성북리 **	김형화
28	-	산20-1	도	388	192	삼척읍 성북리 **	김형화
29	-	산20-2	도	2,010	1,301	삼척읍 성북리 **	김형화
30	-	산21-1	도	893	362		삼척시
31	-	산21-4	도	1,122	154		삼척시
32	-	산21-5	도	1,621	577		삼척시
33	-	산22-1	도	1,159	887		삼척시
34	-	산22-2	임	7,959	1,269	점선군 사북읍 사북리 4**** 주공사북아파트*****	권종길
35	-	산22-3	도	156	76		삼척시
36	-	산22-4	도	641	507		삼척시
37	-	산23-1	임	12,235	44	하장면 판문리 *	이교철
38	-	산23-2	임	9,909	78	하장면 판문리 *	이교철
39	-	산23-3	도	6,631	1,466		삼척시
40	-	산23-4	도	2,620	407		삼척시
41	-	산23-5	도	200	21		삼척시
42	-	산23-6	도	1,716	1,362		삼척시
43	-	산23-7	도	3,450	1,222		삼척시
44	-	산24	임	39,317	143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 ***호(괴안동,현대***)	김진수
45	-	산24-1	도	300	53	태백시 황지동 ***-5	서극남
46	-	산24-2	도	2,036	1,079		삼척시
47	-	산25-1	도	144	103	서울 서초구 방배동 1*** 대우효령아파트1***-***	김재홍
	-	산26-3	도	3,307	306		삼척시
합계		48필지		217,153	23,682		